

의안 번호	428
----------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운 영 위 원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2025. 3. 20.

전문위원 이 현 숙

1. 제안경위

가. 제안자 : 박영섭 의원 외 20명 공동발의

나. 의안번호 : 제428호

다. 제안일자 : 2025. 2. 28.

라. 회부일자 : 2025. 3. 13.

2. 제안이유

- 성북구의회 의안 제출일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안 배부가 원활히 이루어져 충분한 의안 검토 시간을 확보하고, 의안 배부 방식과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방식을 개선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정 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안 제출일 명시(안 제9조)

나. 의안 배부 방식 개선(안 제10조)

다. 위원회 심사보고서 제출 방식 개선(안 제55조)

라.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 처리 절차 규정(안 제6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의회사무국

라. 입법예고

1) 예고기간 : 2025. 3. 6. ~ 2025. 3. 12.

2) 예고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개요 및 취지

- 본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안 제출기한에 대한 명확한 규정으로 충분한 의안 검토 시간을 확보하고, 의회기능을 한층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의안 제출기한 및 배부·제출 방식, 기간 계산 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검토내용

- 현재 성북구의회는 의안 제출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안 배부가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지방자치법」 제83조1)에 의하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회의규칙에 의안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것은 가능한 사항이며, 서울시의회 및 22개 구의회에서 의안 제출기한을 명시하고 있음.

1)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 서울시의회 및 타 의회 제출기한 명시 현황 >

2025.3월

제출 기한	의회명	의회수
회기 15일 전	서울시, 서초	2개 의회
회기 12일 전	중구	1개 의회
회기 10일 전	광진, 강남, 강동, 관악, 도봉, 동대문, 마포, 서대문, 송파, 영등포, 용산, 은평, 종로, 중랑	14개 의회
회기 7일 전	구로, 금천, 노원, 동작, 성동, 양천	6개 의회
없음	강서, 강북, 성북	3개 의회

- 최근 의안 제출 기한을 개정하는 의회들을 살펴보면 15일 전 또는 12일 전으로 개정한 의회가 있으나, 대부분의 의회가 10일 전(7개 의회에서 14개 의회)으로 조정하고 있음.
- 의안 제출 기한을 규칙에 명시하는 것은 의안의 충분한 검토와 심사 기간 확보라는 점에 의의가 있으나, 의원 및 단체장의 의안 제출권 제한이 우려될 수 있으며, 결산서나 예산안 등 법령에서 제출기한²⁾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긴급한 경우를 위하여 단서 조항이 필요한 사항임.

□ 주요내용

가. 안 제4조(회기) 및 안 제71조(기간의 기산일)

- 기간 계산 기준을 개정하여 동일한 기준 적용으로 절차 진행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함.

2)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른 감사위원(이하 "감사위원"이라 한다)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16.>

· **지방자치법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회기) ①·② (생략) <신 설>	제4조(회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71조(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의한 <u>기간의 계산에는 첫날을 산입한다.</u>	제71조(기간의 기산일) 이 규칙에 따른 <u>기간의 기산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 제10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징계의 효력은 본회의 의결 후 선포한 때부터 적용한다.</u>

- 현재 「지방자치법」에는 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지방의회 운영과 관련된 기간 계산은 「민법」에서 정한 방법을 따르고 있으나, 집회일 공고(초일 불산입), 입법예고(초일 산입) 등 기간 계산 방식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절차 진행시 착오 가능성이 높음.
- 기간 계산 방법을 「민법」 3)의 원칙을 준용하여 초일 불산입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10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4)에 따른 징계의 효력은 예외적으로 초일을 산입하여 현재 징계 의결 방식과의 적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의회 및 타 의회 기간 기산일 규정 현황 >

2025.3월

초일 산입 (13개 의회)	초일 불산입 (13개 의회)
성북 , 강북, 구로, 금천, 동대문, 동작, 마포, 서대문, 성동, 송파, 은평, 중구, 중랑	서울시, 강남, 강서, 관악, 노원, 도봉, 서초, 양천, 영등포, 용산, 종로

- 3)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지방자치법 제100조(징계의 종류와 의결)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4. 제명

나. 안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 의회 개의 시 회의에 관한 선포 관련 법을 「지방자치법」 제73조제1항에서 제72조제1항5)으로 관련법 오류 사항을 정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략) ② 의장은 제2조에 따라 개의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제1항 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72조제1항 ----- -----.

다. 안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의안 제출기한 조항 추가

- 의안의 충분한 검토 시간 확보를 위해,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명시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② (생략) <신 설>	제9조(의안의 제출·발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거나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안 제10조(상임위원회 회부), 안 제55조(심사보고서 제출)

- 의안 인쇄 배부 및 심사보고서 서면 제출 외에도 전자문서 전송도 병행하고 있어 현 운영 방식을 회의규칙에 반영하고자 규정.

5) 지방자치법 제72조(의사정족수)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제73조(의결정족수) ① 회의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마. 안 제63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규정 신설

-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성북구의회 기본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 결산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의규칙에 절차 명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3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

바. 안 제6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제3항 삭제

- 징계의 의결과 선포에 관한 조문이나, 제3항은 의원의 징계 요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제64조제3항과 중복되어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② (생략) ③ <u>의원이 징계대상의원</u> 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68조(징계의 의결과 선포)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참고】

※ 회의규칙 제64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 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위원이 있을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② 위원장은 소속위원회 중에서 징계대상위원이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③ 의원이 징계대상위원에게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 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현행 회의규칙에 있는 오류 사항과 부정확한 표현을 정비하여 회의규칙의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의회 의안 제출일을 명시함으로써 성북구의회 의원들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회의 진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관련 법령의 근거 규정 및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